

※ 붙임

국외출장 복명서

2018. 9. 10.

국외출장 복명서

1. 출장개요

1. 출장자 및 출장기간

성명	소속	직급	출장지	일정
이천현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일본도쿄	2018.08.08.~10. (2박 3일)
임정호	부패·경제범죄연구실	부연구위원		

2. 출장지 및 출장목적

출장지	목적
- 2018년 용역사업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 정비방안」 수행과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과 관련한 형사처벌 관련 자료 수집 및 관계 전문가 면담	
일본 동경대학 카와이데 토시히로 (川出敏裕) 교수 면담	-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위반행위 형사처벌과 관련한 처리 절차 - 위 법령과 형법과의 관계 - 형사처벌 관련 자료, 사례 등 자문 및 관련자료 수집
일본 경찰청 방문·관계자 면담	- 원자력 관련 위반사건의 적발과 처리절차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사권과 수사권의 관계 - 원자력규제위원회와 경찰청의 협력관계 -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위반행위 형사처벌 건수 및 사례 - 형사처벌 사례 수집, 원자력 안전 관련 사건처리 절차 등 자문

3. 전체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8월 8일(수)	- 출국(서울/김포공항) - 도착(도쿄/하네다공항)
8월 9일(목)	-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방문 및 관련자료 수집 ○ 시간: 10:00~ ○ 장소: 東京大學 法学部 ○ 주소: 東京都文京区本郷7丁目3-1 ○ 면담: 카와이데 토시히로(川出敏裕) 교수
8월 10일(금)	- 일본 警察庁 방문 ○ 시간: 10:00~

	○ 장소: 警察庁 ○ 주소: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2丁目1番2号 ○ 면담: 오시마 코지 (大島光司) - 귀국(도쿄/하네다공항) - 도착(서울/김포공항)
--	---

II. 세부내용

1.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 전문가 면담

☐ 면담자

- 카와이데 토시히로(川出敏裕)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선임연구위원), 임정호(부연구위원)

☐ 원자력발전사고에 관한 형사책임 논의

(1) 형사처벌규정

- 「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원자로 등 규제법」(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의 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및 폐기사업 및 원자로의 설치 및 가동 등,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하여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2) 원자력 관련 형사처벌 주요사례

○ 도카이촌 JCO임계사고(東海村 臨界事故)

- 1999년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나카군(那珂郡) 도카이촌(東海村)에 있는 “주식회사 JCO”(Japan Nuclear Fuel Conversion Company)의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발생한 일본 원자력 관련 사상 첫 임계사고
- 작업자 3명이 중성자 등의 방사선에 피폭되어 급성방사선증 상해를 입었고, 결국 그 가운데 2명이 사망하였고 인근 주민 600명 이상이 피폭의 영향을 받았
- 본건 임계사고와 관련하여, 당시의 도카이사업소장 B, 핵연료 제조를 담당하는 제조부의 부장 C, 원자로등규제법에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는 핵연료취급주임자 D, 제조부문의 작업현장을 감독하는 직장장 E, 제조부에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하는 계획그룹의 주임 F, 혼합균일화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반의 반장 G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
- B, C 및 D에 대하여는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환시험동에서 우라늄을

가공함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시설의 설비를 변경함으로써 「원자로 등 규제법」 위반죄(가공시설의 무허가변경)도 적용

- 특히 B는 피고인 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도카이사업소에서 안전관리자인 제조부장 C로 하여금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핵연료물질의 가공공정에 있어서 임계관리방법에 관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지 않아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죄(안전관리자의 직무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기소
- 핵연료가공사업자인 피고인 회사 A(주식회사 JCO)도 「원자로 등 규제법」 위반 및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1심에서는 피고인 회사 A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엔, B에 대하여는 금고 3년(5년 집행유예) 및 벌금 55만엔, C에 대하여는 금고 3년(4년 집행유예), D 및 E에 대하여는 금고 2년(3년 집행유예), 그리고 F에 대하여는 금고 2년 6월(4년 집행유예), G에게는 금고 2년(3년 집행유예) 을 각각 선고됨

* 검찰 및 피고인측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 확정

피고인	구형	1심 선고(확정)	
		형량	적용법조
A	벌금 100만엔	벌금 100만엔	- 원자로등교규제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6조 제1항 - 노동안전위생법 제122조, 제12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B	금고 4년, 벌금 50만엔	금고 3년(5년 집행유예), 벌금 55만엔	- 형법 제211조 전단 - 원자로등교규제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6조 제1항 - 노동안전위생법 제122조, 제12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C	금고 3년 6월	금고 3년 (4년 집행유예)	- 형법 제211조 전단 - 원자로등교규제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6조 제1항
D	금고 3년	금고 2년 (3년 집행유예)	- 형법 제211조 전단 - 원자로등교규제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6조 제1항
E	금고 3년	금고 2년 (3년 집행유예)	- 형법 제211조 전단
F	금고 3년	금고 2년 6월 (4년 집행유예)	- 형법 제211조 전단
G	금고 2년 6월	금고 2년 (3년 집행유예)	- 형법 제211조 전단

○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사고

- 2011년 3월 11일 동북 지방 태평양 바다 지진에 의한 지진동과 해일의 영향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노심 손상 등에 의한 대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원자력 사고. 일본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발전사고(국제 원자력사고 등급(INES)에서 최악 7(심각한 사고)로 분류됨).

- 동 사고의 영향으로 천 여명이 사망하였고, 10만명의 주민이 대피하게 됨
- 관계자 기소 경과

일자	내 용
2011.3.11.	- 동북지방 태평양 바다 지진 발생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발생
2012.6.11	- 후쿠시마현 주민을 중심으로 ‘후쿠시마원전고소단’이 결성되어, 14,716명 이 도쿄전력 관계자 등 43명을 형사고소
2013.9.9	- 검찰청이 형사고소에 대해서 용의자 전원 불기소 처분
2013.10.16	-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후쿠시마원전고소단이 도쿄전력 간부 6명을 검찰심 사회에 심사 신청
2014.7.31	- 도쿄5검찰심사회가 도쿄전력 전 간부 3명을 “기소상당”으로 의결
2015.1.22	- 검찰청이 도쿄전력 전 간부 3명에 대해서 다시 불기소 처분
2015.7.31	- 도쿄5검찰심사회가 도쿄전력 전 간부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강제기소” 결정
2016.2.29.	- 기소
2017.6.30.	- 제1차 공판
현 재	- 제1심 공판 진행 중

- 도쿄 검찰청은, 도쿄전력의 임원(3명)들에 대한 형벌 부과여부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범 성부의 관점에서 볼 경우, 본 사고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 및 이들에 근거한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재)불기소 처분함(2015.1.22.).
- 그러나 도쿄5검찰심사회는 당시의 후쿠시마 제1 원전에 관련된 해일에 대한 당시의 지식과 원 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사고에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강제기소’ 결정을 함(2015.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명은 도쿄도 치요다구(東京都千代田区)에 본사를 둔 도쿄전력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동사가 후쿠시마현 후타바군(福島県 双葉郡 大熊町)에 설치된 발전용 원자력 설비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가동, 안전보전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지만,

모두 각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동 발전소 원자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이 예상되는 자연현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동 발전소에 오나하항(小名浜港) 공사 기준면에서 10m 높이의 부지를 넘는 해일이 내습하여, 그 해일이 동 발전소의 비상 전원설비 등이 있는 터빈건물 등에 침입하는 것 등으로 인해 동 발전소의 전원이 상실되어, 비상용 전원설비 및 냉각설비 등의 기능이 상실하고 원자로의 노심 손상을 주고 가스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동 발전소에 10m판을 넘는 해일의 내습에 의해서 터빈건물 등이 침수되어 노심 손상 등에 의한 가스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방호조치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동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멍하니 가동을 계속한 과실에 의하여,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 기인하고 내습한 해일이, 동 발전소의 10m판상에 설치된 터빈건물 등에 침입한 것 등으로 인하여 동 발전소의 모든

교류전원 등이 상실되어, 비상용 전원설비 및 냉각설비 등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이에 의한 원자로의 노심 손상 등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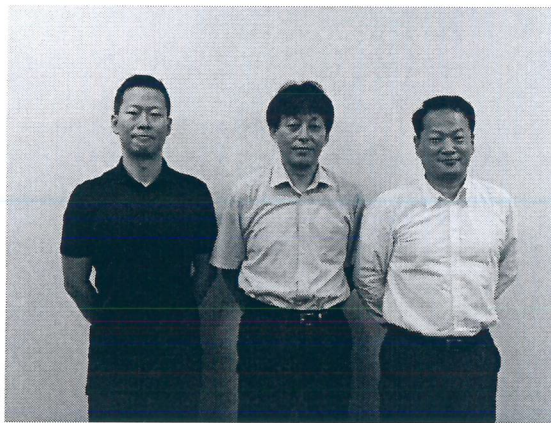
1. 동년 3월 12일 오후 3시 36분경 동 발전소 1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가스 폭발 등을 야기시키고 동 원자로 건물 외부벽 등을 파괴시킨 결과, 3명에게 이에 따라 날아든 파편에 접촉시키는 등에 의해서, 그 때, 각각 동 장소 부근에서 상해를 입히고,

2. 동년 3월 14일 오전 11시 1분경 동 발전소 3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가스 폭발 등을 야기시키고 동 원자로 건물 외부벽 등을 파괴시킨 결과, 10명에게 이에 따라 날아든 파편에 접촉시키는 등에 의해서, 그 때, 각각 동 장소 부근에서 상해를 입히고,

3. 43명을 상기 수소가스 폭발 등에 의해 장시간의 반송·대기 등에 따른 피난을 피할 수 없게 한 결과 사망케 하고,

4. 상기 수소가스 폭발 등에 의해 병원의사들이 피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결과, 동 병원에서 입원자로 중인 사람 1명에 대한 치료·간호를 불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동인을 사망케 한 것이다.

(2015년 7월 30일)



川出敏裕 교수

2. 일본 경찰청(警察庁) 관계자 면담

□ 면담자

- 오시마 코지(大島光司) 과장보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선임연구위원), 임정호(부연구위원)

□ 경찰청(警察庁, National Police Agency)에 대한 소개

1) 조직

- 국가의 경찰행정기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 관할 하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일반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독하는 활동) 하에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음
- 경찰청은 내부부서(장관관방과 5개국 및 2부)와 3개의 부속기관(경찰대학교 등), 지방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7개의 관구경찰국과 2개의 정보통신부)

* 일본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경찰로는 도도부현에 경찰본부가 설치되

어 있음

2) 업무

- 집행기관이 아님
- 경찰업무의 기획, 예산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도도부현 본부장 지명, 국제협력 추진, 각 국가와의 치안·수사관련 협력지원 업무를 수행

3) 지방기관

- 지방경찰은 7개의 관구경찰국과 2개의 정보통신부가 있음
- 관구경찰국(管区警察局)은 - 경찰청의 기능을 지역을 나누어 분장하는 기관으로서 - 東北管区警察局, 関東管区警察局, 中部管区警察局, 近畿管区警察局, 中国管区警察局, 四国管区警察局, 九州管区警察局이 있음
- * 北海道(홋카이도)는 그 지역이 너무 넓고, 東京都(도쿄도)는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관구경찰국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음(각 지방 경찰본부에서 경찰청의 지방기관의 기능을 직접 수행함. 도쿄도는 '도쿄도 경찰본부'가 아닌 '경시청'(警視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2개)는 관구경찰국이 없는 홋카이도와 도쿄도의 경찰통신사무를 수행

4) 국가공안위원회

- 국무대신인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 경찰을 관리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적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 각각의 구체적인 경찰 활동에 대해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지는 않고, 단지 경찰청을 관리하고 또 경찰청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

5) 기타

- 지방 경찰청 등에 대한 내용 (생략)

□ 원자력 관련 위반자 형사처벌 관련

(1) 「원자로 등 규제법」 위반 수사사례

- 현재까지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소개된 것 이외에 1건을 수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2) 시마네(島根)대학 교수의 핵연료물질 불법구입사건

- [사건 개요] 시마네 대학교(島根大総合理工学部)에 재직하고 있던 A교수(55세)는 2005년 9월에 본인의 지도를 받고 있던 중국인 연구원 B(43세)에게 지질 연대측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핵연료물질의 구입을 지시. 이에 B는 산화우라늄 등 총 2.8g의 핵연료물질을 인터넷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판매회사에 주문하였고, 2005년 10월 대금으로 11만엔을 송금.

A는 B가 중국으로 귀국한 후인 2006년 6월 택배로 도착한 핵연료물질을 양수하여 학교 보관창고에 반입함. A는 세관을 통과하기 위하여 송장에 실제와 달리 기재하도록 판매자에게 의뢰함. 그러나 - 경찰 조사에 따르면 - A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소량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함. 핵연료물질의 방사선량은 생활공간에서의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으며 인체에 영향도 없었다고 함.

- [수 사] 島根県警生活保安課와 마츠(松江) 경찰서는 2007.9.21.일 A와 시마네(島根)대학교를 「원자로 등 규제법」위반 (양도의 제한) 혐의로 마츠(松江)지검에 불구속 송치

- [처 리] 2007년 12월 28일 마츠(松江)지검은 A에 대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을 구입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

□ 원자력규제위원회와의 관계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의 관계
 - 원자력규제위원회에는 단순히 행정 조사권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음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보안을 위한 조사를 행할 경우, 관련 보안규정 위반행위가 매우 중하고 관련 벌칙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
 - 그러나 현재 까지 이러한 통보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위의 〈시마네(島根)대학 교수의 핵연료물질 불법구입사건〉의 경우에는, A교수가 학술대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 구입에 대한 허가 여부가 문제되어 이를 경찰이 인지하게 되었다고 함
-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한국에서와 같은 특사 경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자력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의 수사를 위하여 특별전담부서나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大島光司 (警察庁 警視)

(끝)